

# 『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

### 3. 주요내용

- 단체장의 책무(안 제4조)
  -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
- 주민의 권리(안 제5조)
  -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
-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(안 제6조)
  - 예산편성방향, 주민참여예산의 범위,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공고
- 의견수렴 절차(안 제7조)
  -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
- 결과 공개(안 제9조)

### 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재정법」 (법률 제10439호, 2011.3.8 공포, 2011.9.9 시행) 제39조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(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제정하는 조례임

### ○ 주요 내용은

-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, 시민 누구나 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며,
- 예산편성방향, 주민참여예산의 범위,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공고 하고,
-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임

### 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상 임의규정형식으로 되어있던 지방 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절차를 강행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,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, 운영방법 등을 제정하는 것임
- 따라서 이 조례안은 구미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,
-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됨으로 선심성, 낭비성 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규정명시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.